

치의학전문대학원 내규

시행 : 2017.09.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조(대학원의 종류)에 의거 설치하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학사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내규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석사과정에 적용한다.

제3조(운영방침) 본 대학원은 치의학에 대한 기본적 연구와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 및 사명감을 갖춘 우수한 치과의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제4조(영문표기) 본 대학원 및 학위명의 영문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희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 :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KHUSD)
2. 석사과정졸업학위 : DMD (Doctor of Medicine in Dentistry), MSD (Master of Science in Dentistry)

제2장 교육목표

제5조(교육목적) 본 대학원의 교육목적은 경희대학교의 건학이념인 문화세계(文化世界)의 창조(創造)와 교육 목적인 '문화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유능한 지도자 양성의 정신'을 토대로, 우수한 인성과 수행 능력을 갖춘 치과 임상의 및 치의학 연구자를 배출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치의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6조(교육목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치의학관련 제반 질환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기본적 지식과 술기를 습득한다.
2. 시대·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 태도를 기른다.
3. 환자와 사회에 대한 치과의사의 책임감과 윤리관, 그리고 인간성을 함양한다.
4. 인류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의 이해를 우선적 가치로 추구한다.

제3장 입학

제7조(전형종류) ① 본 대학원의 학생선발은 일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도 있다.
② 특별전형은 본 대학원의 특성화에 맞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8조(지원자격) 일반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 을 갖추어야 한다.

1. 전적대학(전문대학 포함)의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인 자
2. 해당년도 치의학교육입문검사(D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3. 학부에서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소속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별표1]의 2개 이상의 과목군에서 선수과목 또는 인정과목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4. 제3호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른 학점을 대학원 과정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을 졸업한 자

제9조(전형방법) ① 일반전형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에 응시할 수 있다.

② 특별전형 방법은 입시전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전적대학 성적반영방법) 일반전형의 경우 졸업자는 전적대학의 전 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을 반영하되, 대학원 성적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영어시험) 영어시험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반영을 원칙으로 하되,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최종선발) ① 최종합격자는 전형 유형별로 전형 총점의 순으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학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② 입학전형기준은 매 입시 전에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입학전형 지원구비서류 등) 본 대학원 입학전형 지원자의 구비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원서(원서용 사진첨부)
2. 치의학교육입문검사 성적표
3. 학업(연구)계획서(소정양식) 및 자기소개서
4. 학위취득(예정)증명서 (학위등록번호 기재)
5. 하위 학위과정의 성적증명서(평균평점 및 백분율 성적 기재). 다만,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6. 기타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또는 자료

제4장 학위의 구분 및 종류

제15조(분류) ① 본 대학원은 전문 학위를 수여하며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은 학문의 발전추세에 따라 신학문 분야 학위와 2개 이상 학위가 결합된 복합학위(Combined Degree : “예” 치의과학박사 DMD-PhD)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복합학위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6조(전문학위의 표기방법) 전문학위의 표기는 학위명 다음에 괄호 안에 전문분야를 표기한다. (“예” : 치의학 석사<치의학전공>)

제5장 조직 및 직제

제17조(조직) ① 본 대학원의 조직은 대학원장, 교무 부대학원장, 연구 부대학원장, 학생지도실, 치의학교육실, 입학관리실, 대외협력실, 국제교류실 및 행정실로 한다.
② 학생지도실, 치의학교육실, 입학관리실, 대외협력실, 국제교류실 및 행정실에는 실장을 두며, 각 실의 특성에 따라 직원, 실험기사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치의학과에는 기초치의학 및 임상치의학을 둔다.
④ 본 대학원에는 각 전공교실을 두고, 각 전공교실별로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⑤ 각 전공교실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 ① 본 대학원의 학사 및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Search & Recruit(S&R) 위원회
2. 자율운영예산위원회
3. 교육과정위원회
4. 학생지도위원회
5. 입시전형위원회

6. 제규정운영위원회
7. 문화홍보 및 사료보존위원회
8.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위원회
9. 발전기금관리 및 발전추진위원회
10. 보수교육 및 졸업후과정개발위원회
11. 교원인사소위원회
12. 치의학연구발전 및 연구윤리위원회
13. 임상교육연구위원회
14. 공간조정위원회

(2) 각 위원회에 관한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부속기관

제19조(부속기관의 종류) 본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1. 경희대학교치과병원
2.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3. 경희대학교 구강생물학연구소
4. 경희대학교 치과재료시험개발센터

제20조(치과병원) 경희대학교치과병원 및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은 학생의 임상실습을 담당하며, 그 외 사항은 각 치과병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장학금

제21조(지급기준)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한 자
 2. 수혜요건이 정해진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자
 3. 총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②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는 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장학금의 종류 등) 장학금의 종류·지급대상 및 장학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제23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은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장학금 지급금액을 감면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계좌이체할 수 있다.

제24조(장학생 선정절차) ① 본 대학원장은 학생지도실장의 추천 및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장학생을 선정한다.

② 장학금은 이중지급 할 수 없다. 다만, 학술연구장학 및 근로장학은 예외로 한다.

제25조(장학금환수) 재학 중 장학금을 전액 지급받은 자가 적을 상실한 경우, 수혜받은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장 등록

제26조(등록금 납부)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추가등록) 소정의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학생은 등록 연기원을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가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4의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29조(휴학 및 등록금) ① 휴학 시 휴학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하여 별표4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② 등록을 마치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납부된 등록금은 복학시 등록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9장 수업

제30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전문석사과정 4년(8학기)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학기는 16주 이상으로 하고, 한 학기는 2개 분기로 나누며 각 분기는 8주 이상으로 한다.

제31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치의학교육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②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수료를 인정한다.

③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160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최대 25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32조(출석일수) ① 출석일수가 전체의 3분의 2에 미달된 자는 해당과목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② 교과목담당교수는 출결기재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질병으로 인한 결석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3주 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사망의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1주일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3조(학업평가) ① 시험기간에 출석을 인정하는 결석이 발생한 경우,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추가시험의 경우 A학점(90점)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② 본 대학원의 등급 및 평정 표는 다음과 같다.

등급	점 수	평점
A+	93~100	4.3
A	90~92	4.0
A-	87~89	3.7
B+	83~86	3.3
B	80~82	3.0
B-	77~79	2.7
C+	73~76	2.3

C	70~72	2.0
C-	67~69	1.7
D+	63~66	1.3
D	60~62	1.0
D-	57~59	0.7
F	56점 이하	0
I (미완)		
P (합격)		
NP(불합격)		

제34조(유급)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이 된다.

1. 당해 학기에 개설된 전공필수과목의 성적이 한 과목이라도 F(56점 이하)인 경우

2. 학기 평점이 1.7 미만인 경우

② 유급된 학생은 해당 학기의 모든 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하며, 해당 학기 성적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35조(강의계획서) 매 학기 개설된 과목의 강의계획서는 수강신청 이전에 학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6조(강의평가) 본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기말에 즈음하여 학생들로부터 소정의 강의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장 학적 변동

제37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통산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1학기 동안을 휴학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이 된다.

제38조(복학)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되,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39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전조에서 정한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기간 내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4. 연속 3회 유급 된 자
5.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제적이 의결된 자

제11장 졸업

제40조(졸업요건) 본 대학원 교과과정이 정한 교과목의 학점을 수업 연한 내에 취득하고 자율선택과정과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통과한 학생에게는 [별표3]의 치의학석사 학위기를 수여한다. 다만, 학위청구논문은 졸업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율선택과정과 졸업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졸업논문 특성화과정 선택) 학위청구논문 작성을 위하여 학생 개개인의 관심과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치과의사로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넓혀 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 탐색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부, 외부 및 해외실습 등 특성화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한 후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특성화과정의 과목, 목적, 대상기관 및 운영은 따로 정한다.

제42조(공개발표의 실시)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제41조의 특성화과정 중 한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그 논문의 내용을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공개발표에 합격한 경우 이는 공개발표 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5개 학기 동안 유효하다.

② 공개발표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본 대학원 전임교수가 참관하여야 한다.

③ 공개발표는 모든 사람이 방청할 수 있다.

제43조(공개발표의 합격기준) 공개발표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되, 그 기준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44조(논문예비계획서 제출 등) ① 학위과정의 학생은 공개발표 최소 한 학기 전에 연구 부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논문예비계획서를 논문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연구 부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예비계획서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본 대학원 전임교수가 심사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공개발표 및 논문예비계획서 심사결과를 연구 부대학원장을 경유하여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학위청구논문의 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이하 “논문심사”라 한다)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내용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의 결과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논문심사위원장은 이를 소정의 기일 내에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46조(논문심사의 합격 등)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논문심사위원회) ①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의 선정은 논문지도교수가 교무 부대학원장을 경유하여 본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본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④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제48조(교외 위원 위촉) ① 본 대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교외 인사 중에서 1인까지 석사학위청구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교외 인사로서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교외 인사로서 논문심사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제2항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9조(논문의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용 논문은 가제본된 것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대학원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제본된 것을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논문지도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논문지도교수를 변경

하여야 한다.

1. 퇴직한 경우
2. 1년을 초과하여 해외여행을 하게 된 경우
3. 1년을 초과하여 휴직한 경우
4. 기타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1조(논문지도교수 변경절차) 교무 부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고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2장 보칙

제52조(보칙)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희대학교학칙」을 준용하며, 본 내규의 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5조(유급)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규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유급을 받은 학생은 유급을 받은 당해 학기에 한하여 개정되기 전의 내규를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내규 제18조의 삭제된 위원회의 기능은 통합된 위원회에 속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2조는 2017년 9월 1일 이전 입학하여 재학중인 자에게도 적용된다.

제2조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치과대학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유급 및 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1년 2월 이후(2021년 2월 포함) 졸업하는 자는 치과대학 치의학과 동 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르며,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치의학석사학위를 수여한다.
- ② 이외 필요한 사항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별표1] 유사과목 목록

	유사이수과목	기타유사인정과목	유사불인정과목
수학	해석학(1,2), 선형대수, 미분방정식, 현대기하학, 위상수학, 대수학(1,2), 복소수함수론, 해석학특강, 정수론, 다중선형대수, 집합론, 조합론, 수치해석, 선형계획법, 편미방정식, 대수적위상, 미분위상, 통계학, 확률론, 미분기하, 수리논리학, 퍼지이론, 보험수학개론, 확률과정론, 기하특강, 위상특강, 실변수함수론, 응용수학특강, 대수특강, 군표현론, 고급보험수학, 전산통계, 통계학특강, 미분방정식, 경제수학, 공업수학, 통계수학, 미분 적분, 이산수학, 응용해석, 집합 및 거리공간론, 그래프이론 등	생물통계학, 대학수학(I,II), 대학수학, 수학(I,II), 공학수학, 수학 및 연습(I,II), 프로그래밍(수학교과와 관련된 경우), 섬유고분자응용수학(I,II), 통계학 및 실습, 공업수학(I), 미적분학과 행렬 및 연습, 일반수학(I,II), 일반수학 및 연습, 수학, 미적분학(I,II), 미적분학, 고등미적분학, 의학통계학, 생활통계학, 실험통계학, 미적 과해석기하, 미적분학과 벡터해석, 인문사회학을 위한 수학, 응용선형대수, 응용수학 및 실습	E.D.P.S 등
물리	물리학개론, 기초물리학, 일반물리학, 역학, 현대물리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열물리학, 통계물리학, 광학 등	물리학및실험 1, 물리학및실험 2, 일반물리학및실험 1, 2 대학물리학, 물리학, 일반물리학(I,II) 동역학, 기초물리학 및 실험	약학물리, 약품물리, 물리학의 이해, 물질과 에너지, 자연과학개론 등

	유사이수과목	기타유사인정과목	유사불인정과목
--	--------	----------	---------

화학	<p>물리화학실험, 물리화학(1,2),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통계열역학, 물리화학특강, 기기분석, 계산화학, 고체화학, 무기각론, 유기합성화학, 유기분석 및 실험, 고분자화학, 양자화학, 화학반응속도론, 생화학, 무기화학실험, 분석화학실험, 유기화학실험, 기기분석실험, 유기정성, 생물리화학, 전기분석화학, 문자분광학, 유기이론 등</p>	<p>일반화학(I,II), 화학 및 실험(I,II) 일반화학 및 실험, 화학(I,II), 농화학 및 실험, 식품생화학(I,II), 분석화학 및 실험, 천연물화학 및 실험, 일한화학 심화과정, 화학개론, 대학화학 및 실험(I,II), 응용화학(기초), 유기약화학(I,II)</p>	화학의 이해 등
생물	<p>동물분류학, 식물분류학, 동물비교해부학, 세포생물학, 식물형태학, 동물발생학, 세포유전학, 집단유전학, 면역학, 진화론, 균학, 조류학, 환경생물학, 세균학, 육수학, 미생물유전학, 곤충생리학, 분자생물학, 병원미생물학, 일반생물학 I/II, 동물학, 식물학, 동물생리학, 식물생리학 등</p>	<p>세포학, 유전학 및 진화론, 유전공학, 고생물학 및 실험, (기초)생명과학, 미생물학, 생리학, 생명과학 및 실험, 생물학 및 실험, 경제생태학, 환경생태학, 원예작물생리학, 기초생물학, 응용생물학, 일반미생물학, 농업생물학 및 실험, 식품미생물학 및 실험, 인체생리학, 생물학(I,II), 환경미생물학, 환경미생물학 실험, 미생물과 인체의 신비, 해부학, 환경과 생태, 인체생물학 및 실험, 일반생물학 및 연습, 생명과학과 공학, 기초생명과학, 약품미생물학, 생물학개론</p>	교양에 해당하는 과목은 불인정, 생물화학 공학, 생물(생명)의 이해 등

[별표2] 장학금의 종류 등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장학내용	비고
교내	총장장학	총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	
	입시장학	입학성적이 우수한 신입생	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 또는 일부	
	성적장학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모범장학	타의 모범이 되며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로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자		
	우정장학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가정환경이 곤란한 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이 정함	
	근로장학	본교 내에서 근로하는 자		
	학술연구 장학	학술연구실적이 우수한 개인		
학술 장학	학술우수 장학	실습우수자 중 교수추천을 받은 학생		
	해외연수 장학	해외에서 연구·연수 또는 세미나 등에의 참가 실적 우수자		
	동문장학 기업장학	기부자의 지정 혹은 교내 추천자		
교외			기부자의 지정금액에 따라 지급	

[별표3] 학위기

학위기

○○○
0000년 0월 00일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
을 이수하고 치의학석사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장 ○○○

위 증명에 의하여 치의학석사학위를 수여함
0000년 0월 00일
경희대학교 총장 ○○○

학위등록번호 : 경희대 0000000000

등록금의 반환기준(제28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